##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04

발의연월일: 2021. 5. 13.

발 의 자:이수진비・기동민・김병주

김주영 • 안규백 • 양정숙

오영환 · 우원식 · 이형석

정성호 · 홍기원 의원

(11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시에서 주둔하던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에서 고용한 한국인 민간근로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이주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 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	
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	
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	
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	
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	
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	
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일</u> 까	<u>2026년 12월 31일</u>
지 감면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